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598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4년 12월 17일

3. 회부일자 : 2024년 12월 1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곤 속에서 해외 원조를 수차례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인적교류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의 사례입니다. 이에,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6조, 제18조의2 및 제24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안 제6조)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동 법률의 취지가 존중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동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u>	<u>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동 법률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기본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점에서 개정안의 규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는바, 양자를 병기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음.

<기본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례>

제명	규정	비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 규정과 유사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 규정과 유사
소비자 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행정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규정 병기
스포츠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2.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안 제18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u>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음. OECD DAC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0년에 만들어진 OECD 산하 국제기구로, 한국의 OECD DAC 가입은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11월 25일에 ‘개발협력의 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까지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협력의 날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운영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생략)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위원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 사업 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③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

	<u>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u>
--	--

위탁은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민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여 민간이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규정임.

우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동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

기능	비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사·의결 1.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국제개발협력 대상국 선정	제15조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사업 평가	제16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제21조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 중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업무는 주관기관¹⁾의 업무로,²⁾ 위원회의 사무로 볼 수 있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원회가 동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게 하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와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규정은 그 업무의 성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기술적인 것으로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며, 위탁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됨.

4. 조례 제정 근거 마련(안 제25조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³⁾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도 관련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황임.⁴⁾

한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의결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여야 하므로, ‘고유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남도 서천군,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 포상 실시 근거 마련(안 제26조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u>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동기를 부여하며, 우수 사례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유사 입법례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표창,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포상 등이 있음.

〈포상 관련 입법례〉

제명	조문
청년기본법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다만,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이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며,⁵⁾ 현재 동 규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2021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정부 표창 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 현황＞

년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계
2021	2	3	7	8	20
2022	2	3	8	9	22
2023	2	3	8	9	22
2024	2	3	8	9	22

※ 국무조정실장 표창 : '21년 13점, '22년 15점, '23년 15점, '24년 15점
 자료: 국무조정실

문 의 처

02) 6788-5264